유럽, 플랫폼 노동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유럽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는 유럽 16개국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플랫폼 노동 시장 현황 및 한계와 규제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3)]

개요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고용 및 근무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 현황에 대한 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에는 유럽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범주·현황 등이 포함됨
-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유럽 전역*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두 설문조사의 비교를 통해 유럽 지역 플랫폼 노동 변화의 양상을 알아봄

*** 설문조사 대상국가 및 응답수**

실시년도	2017	2018
대상국가	14개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영국)	16개국 ('17년도 대상 14개국 + 체코, 아일랜드)
응답수	32,389건	38,878건

디지털 노동 플랫폼(플랫폼 노동) 정의 및 범주

●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혁신적인 최신 기술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라고 정의하며 연구에 사용된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하는 척도는 다음과 같음

▶ 공급자와 의뢰자 간의 매칭의 디지털화
▶ 지불이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실행
▶ 노동이 웹 기반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을 얻는 자

3) 출처 : https://www.ehstoday.com/safety-technology/article/21151381/oshas-use-of-drones-may-expand-in-2021

- 플랫폼 노동의 빈도, 시간 및 발생 소득을 결합하여 아래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눔

연번	범주	플랫폼 기반 근무시간 (주당)	플랫폼 노동 소득 (총 소득의)	비율* ('18년 기준)	'17년 대비 '18년 노동자 비율 증감여부
1	주업(Main) 플랫폼 노동자	20시간 이상	50% 이상	1.4%	0.9%포인트 하락
2	부업(Secondary) 플랫폼 노동자	10시간 이상	25~50%	4.1%	0.5%포인트 증가
3	극소(Marginal) 플랫폼 노동자	10시간 미만	25% 미만	3.1%	1.5%포인트 증가

* 조사대상국 응답자 중 평균 비율

유럽 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한계와 규제

- 플랫폼 노동은 산발적이고 제약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정책상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및 고용 조건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움
  -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 및 EU 전체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내 소비자 보호, 고용 보고 및 과세 문제가 발생
    - · 대게 '이용약관'에 따르면 '플랫폼'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연결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중개자일 뿐으로 기본 서비스 수행의 손상, 지체 또는 실패와 관련된 책임이 회피됨
    - ·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는 가끔씩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거나 전문적인 거래업체일 수 있으며,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누구에 대해 행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짐
- 유럽 내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EU 소비자 계약법(consumer acquis)」의 적용을 받으며 시장행동[4] 및 소비자 문제를 규제하는 유럽 지침의 구속을 받음
  -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장 관련 있는 지침은 「소비자 권리 지침(2011/83)」, 「서비스 지침(2006/123)」, 「전자상거래 지침(2000/31)」,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2005/29)」등이 있음
  - 하지만 국가, 지역·지방 규정, 판례법으로 인해 EU회원국 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상기 지침 및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님
- 이에 유럽위원회는 2017년 6월 채택한 결의안(2017/2003(INI))을 통해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기존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 및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보장, 노동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 및 납세 의무의 준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유럽위원회는 기본기준(최소 노동 시간 등)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가사 노동자, 호출형[5] 노동자, 단속적(斷續的) 노동자, 바우처 기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실체적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로 'EU 전역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업무 조건'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Ms. 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의장은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업을 모색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질의 노동 조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

4) 원문: Market behavior
5) 원문: On-demand workers,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유럽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주요 정보

- '17년 조사에서 전형적인 유럽 플랫폼 노동자는 젊은 남성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노동자에 비해 가정적인 면모(family commitment)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플랫폼 노동자의 연령군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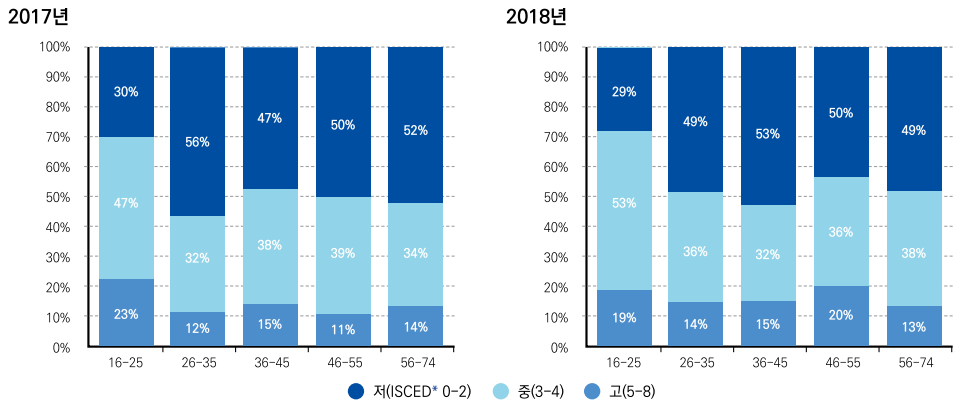

* ISCED : 국제표준교육분류[6]

0	유아교육	3	중등교육 고학년(고등학교에 해당)	7	석사 또는 동등한 수준
1	초등교육	4	중등교육 이후(대학 교육 미해당)	8	박사 또는 동등한 수준
2	중등교육 저학년(중학교에 해당)	5	대학(단기과정) 교육		
		6	학사 또는 동등한 수준		

- 2017년과 2018년 진행된 두 설문조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젊은 여성(35세 미만)의 비율이 3가지 플랫폼 노동자 범주 모두에서 상승하고 있으나, 부업 또는 주업으로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증가율은 각각 6.3%와 7.1%임 → 유럽 노동 플랫폼은 비록 남성 종사자 비율이 여성 종사자에 비해 아직 높지만 여성의 소득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017년 및 2018년 연령 및 성별 복합 오프라인 및 디지털 노동 플랫폼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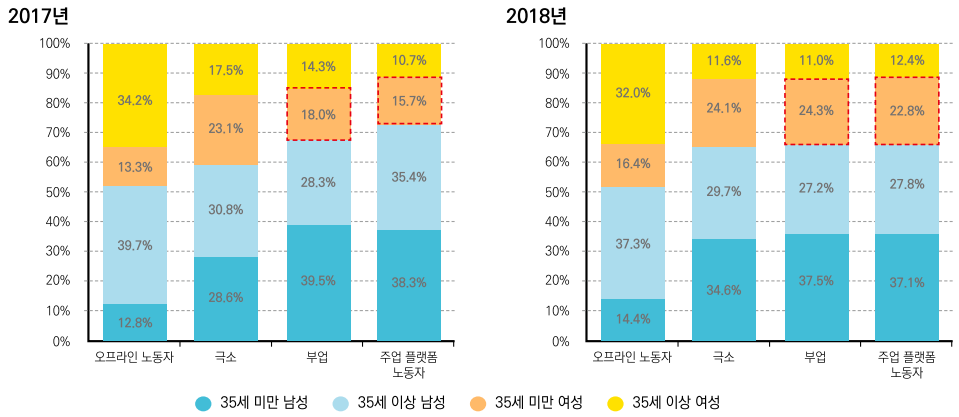

6) 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International_Standard_Classification_of_Education_(ISCED)#Implementation_of_ISCED_2011_.28levels_of_education.29

- ’18년 조사에서 유럽 플랫폼 노동자는 ’17년 응답 집단 대비 더 젊고 더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가 더 크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향을 보임
  - 부양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플랫폼 노동 조건이 서비스 제공자 그 자체를 넘어서 부양 자녀와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의의를 가짐

플랫폼 노동자의 가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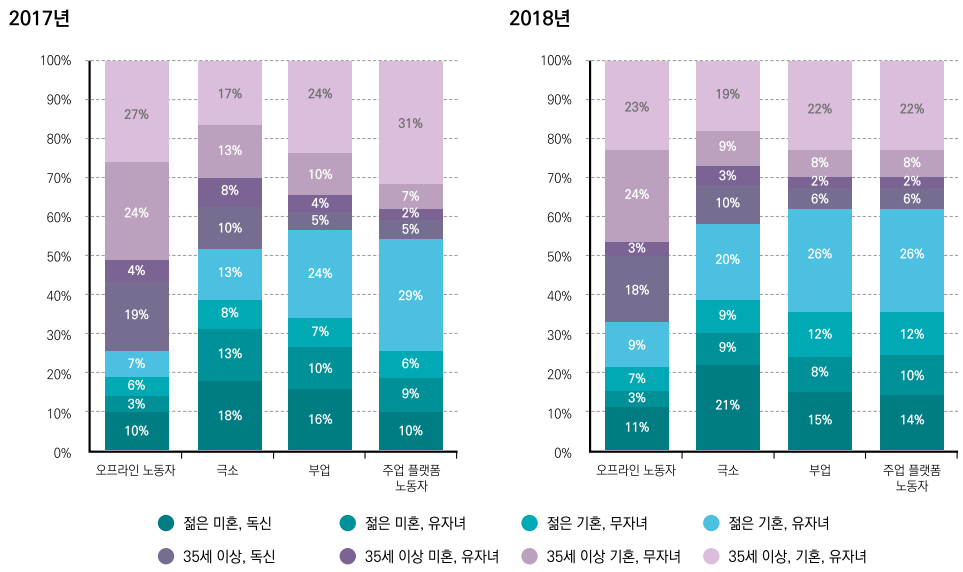

- 이주노동자는 자국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고 임시직에 더 많이 고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적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됨
  -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 보고서(2017)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낮은 숙련도를 요하는 직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과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높은 고용 불안정성 및 임시노동 시장에 고용될 확률이 높다고 함[7)]

    ※ 2018년도에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의 약 7.7%가 외국 출신인 이주노동자였으며 플랫폼 범주별로 봤을 때 극소 플랫폼 노동자의 16.3%, 부업 플랫폼 노동자의 14.4%, 주업 플랫폼 노동자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 보고서, 2017년, Grubanov-Boskovic과 Natale

국가 및 범주별 외국인 플랫폼 노동자

	오프라인 노동자	극소	부업	주업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수
아일랜드	28.3%	39.3%	36.8%	50.6%	322
포르투갈	11.2%	13.7%	16.2%	8.8%	382
스페인	10.2%	18.7%	16.0%	13.7%	477
영국	8.9%	21.4%	18.0%	29.2%	297
스웨덴	8.6%	24.9%	27.7%	26.8%	210
네덜란드	8.1%	24.1%	16.6%	15.7%	314
크로아티아	7.6%	15.0%	14.8%	25.5%	262
체코	5.4%	17.5%	18.0%	10.7%	143
독일	4.6%	10.3%	11.2%	6.5%	252
프랑스	4.1%	23.0%	15.1%	5.1%	213
리투아니아	3.1%	0.7%	4.6%	0.7%	213
슬로바키아	3.0%	7.0%	4.7%	0.0%	162
핀란드	2.9%	25.4%	37.8%	36.7%	99
이탈리아	2.5%	9.5%	9.0%	8.3%	349
헝가리	2.2%	5.7%	9.5%	0.8%	163
루마니아	0.9%	4.0%	0.0%	0.0%	335
총계	**6.0%**	**16.3%**	**14.4%**	**13.3%**	**4,193**

출처: COLLEEM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가 정리한 결과물.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데이터. 플랫폼 노동자 표본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월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만 포함되었다.

- 총 소득의 90%이상 또는 총 소득의 75%~90%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범주는 주업 플랫폼 노동자 범주로 나타남

플랫폼 노동자의 개인소득분위 분포(전체 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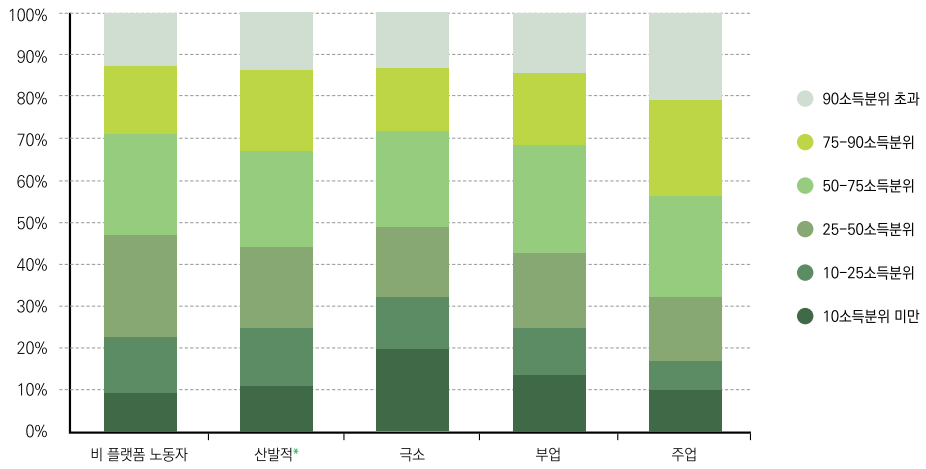

* 산발적 플랫폼 노동자 : 플랫폼 노동 횟수가 월 1회 미만인 분류로 동 연구보고서에서 산발적 플랫폼 노동자 범주는 아주 일부에서만 사용됨

- 플랫폼 노동 범주별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주 60시간 이상 플랫폼 노동 분포가 가장 많은 범주는 주업 플랫폼 노동자로 비 플랫폼 노동자의 2배가 넘으며, 주 20시간 미만 플랫폼 노동 분포가 많은 범주는 산발적 및 극소 플랫폼 노동자(학생이 많은 범주)로 이 역시 비 플랫폼 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노동자 범주별 노동시간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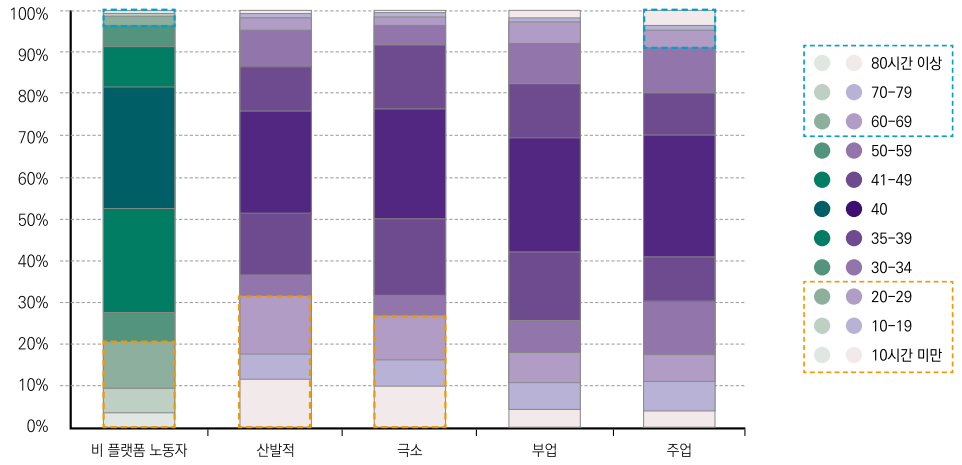

시사점

- 유럽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주 4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사이의 공정거래 등 계약에 관한 지침 외에도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보장하기 위한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해외의 사례들과 같이 국내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음
  - 배달종사자 등 일부 직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 내에서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새롭게 대두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OECD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시간, 작업환경의 위험성,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 산재보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연구와 함께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사업 등을 활용하여 향후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자영인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환경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동 자료의 원문은 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www.kosha.or.kr) 자료마당 〉 국외정보 〉 Global ISSUE Solu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 처 :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안전보건동향 2021. 제482호
※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